

화재보험에도 특별약관 적극 활용해야

1. 머리말

런던 대화재(1666년)와 뉴욕의 대화재(1835년)가 화재보험 산업을 급속하게 발전시킨 촉매제로서 그 역할을 크게 해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 기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연각호텔 화재, 윤성방적 화재, 풍한방적 화재, 1987년의 풍수 재피해 등이 발생, 이들 대재해(Car-



이 해 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전무이사〉

tastrophic Event)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보장을 얻는데 화재보험이 크게 기여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화재보험이 꾸준히 성장하게 된 요인을 나름대로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변화를 시도한 정부의 과감한 공업화 정책과 특별법에 의한 의무부보제도의 실시 등에 있다고 보여진다. GNP에 대한 2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각종 기간산업이 늘어나고 사회간

〈표1〉 연도별 보험종목별 구성비 및 평균성장률

연도	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장기	보증	합계
1963	65.2%	22.8%	10.4%	1.6%	-	-	100%
1978	14.7%	20.8%	30.9%	11.4%	16.8%	5.4%	100%
1979	12.5%	17.3%	35.2%	12.0%	17.3%	5.7%	100%
1980	12.5%	19.1%	33.6%	12.9%	16.2%	5.7%	100%
1981	11.7%	20.1%	34.6%	14.4%	14.1%	5.1%	100%
1982(3)	9.7%	20.5%	33.3%	16.9%	14.0%	5.6%	100%
1982	10.4%	20.0%	34.0%	16.7%	13.5%	5.4%	100%
1983	9.6%	18.7%	37.7%	15.5%	13.0%	5.5%	100%
1984	9.7%	19.0%	40.3%	13.4%	12.5%	5.1%	100%
1985	9.4%	16.4%	45.1%	12.6%	11.9%	4.6%	100%
1986	9.0%	14.7%	47.4%	11.2%	13.0%	4.7%	100%
1987	8.5%	12.8%	51.1%	9.4%	12.1%	6.1%	100%
평균성장률	18.0%	19.3%	33.0%	24.3%	21.3%	28.4%	25.6%

註) 자료: 대한손해보험협회간 '88 한국의 손해보험

참고: 1987년도 일본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일본 손해보험년감 1988)

화재 8.68%, 해상 3.59%, 자동차 40.25%, 특종 11.07%, 장기 36.32%, 보증 0.10%

집자본시설이 확충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Protection)라고 하는 절대적인 요청이 뒤따랐으며, 국민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또한 경제정책을 등에 업고 괄목할만큼 성장하여 이에 따른 보험수요의 증가는 가히 '시대적 필연'이라고 할만큼 놀라운 속도로 올라갔다.

화재보험 성장율을 <표1>에서 보면 과거 10년간(1978~1987) 연평균 18%의 성장을 시현했는데 80년대의 물가 상승율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안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성장율은 고도성장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보험종목간의 성장율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33%), 보증(28.4%), 특종(24.3%), 장기(21.2%) 그리고 해상(19.3%)보다 낮으며 전 종목 평균성장율 25.6%에도 훨씬 밀들어 화재보험산업이 점차로 위축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것은 보험종목간의 점유율비교<표1>에서 보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 화재보험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보험수요자의 수요가 포괄담보(package policy) 등 종합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일본의 경우는 화재보험의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해상이나 보증보다는 높다<표1 참조>.

그러나 미국의 경우 Best's Review 지(1989. 1)에 의하면 화재보험이 전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선(1988년)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 미국의 화재보험산업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은 불특정다수로부터 보험료를 거둬들여 불특정소수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계성보험(Personal Lines)이나 소규모 기업에 한한 것이지,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보험은 비용을 줄이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기업은 손해액(Losses), 비용(Expenses) 그리고 이윤(Profits)에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최근 미국시장에서 위험관리 측면에서 기업에 권장하고 있는 위험재무기법(Deductible, Self-Insurance, Captive Option) 등이 본

격적으로 도입될 때 앞으로 공장물건이 대부분인 화재보험산업은 계속 성장하면서도 그 신장율은 둔화될 것이며, 보험종목간의 구성비 또한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화재보험 협정요율의 인하를 예상할 때 향후 화재보험산업의 구조개선은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2. 화재보험의 현황

가. 원수보험료 실적

한국의 보험시장은 1960년대만 해도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이 대종을 이루었는데 자동차, 특종, 장기, 보증 등의 보험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화재보험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화재보험시장은 적용요율에 따라 협정요율(Tariff Rate)시장과 비협정요율(Non-Tariff Rate)시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협정요율시장은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가 산정, 재무부가 승인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화재보험계약이며 국문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비협정요율시장은 영문약관을 사용하면서 요율은 재보험창구를

<표2> 화재보험 물건별 구성비(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	합 계		주 택		일 반		창 고		공 장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1982	64,032	100.0%	1,395	2.2%	13,469	21.0%	1,577	2.5%	47,591	74.3%
1983	72,389	100.0%	1,469	2.0%	17,006	23.5%	2,100	2.9%	51,814	71.6%
1984	84,419	100.0%	1,499	1.8%	21,074	25.0%	2,197	2.6%	59,649	70.6%
1985	95,154	100.0%	1,757	1.8%	23,111	24.3%	2,158	2.3%	68,128	71.6%
1986	109,312	100.0%	1,990	1.8%	26,820	24.5%	2,103	1.9%	78,399	71.8%
1987	133,625	100.0%	2,067	1.5%	30,166	22.6%	2,750	2.1%	98,642	73.8%
합계	558,931	100.0%	10,177	1.8%	131,646	23.6%	12,885	2.3%	404,223	72.3%

註) 자료 : 한국요율산정회간 '보험통계연보'

통하여 구득한 외국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화재보험의 전체 실적에서 협정과 비협정의 점유율을 보면 협정은 매년 하향추세에 있고 비협정은 상향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영문약관을 선호하는 경향과 해외담보력이 요구되는 대형계약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형공장들은 해외재보험 소화때문에 FOC 영문약관에 Extended Coverage Endorsement (확장위험담보) 등 특별약관을 추가시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표2〉는 화재보험의 물건별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의

하면 6년간 물건별 평균점유율이 주택물건 1.8%, 일반물건 23.6%, 창고물건 2.3%, 공장물건 72.3%로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기업보험인 공장물건임을 알 수가 있다.

주택물건과 창고물건은 점유율이 매년 비슷한 수준이며 큰 차이는 아니나 일반물건은 약간 하향, 공장물건은 상향추세에 있는데 일반물건도 영문약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사료된다. 따라서 요율의 개선, 특약의 개발 등으로 영문약관의 선호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나. 특약별 보험료 실적

협정요율 적용물건의 경우 화재

보험에 추가시킬 수 있는 특별약관은 모두 40여 종류이며 이 중에서 비교적 사용빈도가 많거나 향후 사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약관은 20여 종류나 된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빈도가 많은 약관은 신체손해상책임부담특약과 전기위험부담특약이고 구내폭발손해부담특약도 그 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확장위험부담특약, 악의적인 파괴행위부담특약, 실손보상특약, 재조달 가액부담특약 그리고 기업휴지손해부담특약 등은 1987년 이후에 개발된 것이어서인지 보험가입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연도별 특약점유율을 보면 1983

〈표3〉 화재보험 특약별 보험료실적(총괄)

(단위 : 천원)

특약구분	1986		1984		1985		1986		1987	
	보험료	점유율								
제도차량확장위험부담	352,503	0.681%	3,425	0.006%	411	0.001%	6,613	0.009%	638	0.001%
도난위험부담특약	174,251	0.336%	231,517	0.400%	189,068	0.289%	239,075	0.313%	272,561	0.313%
구내폭발손해부담특약	196,752	0.380%	254,448	0.439%	343,765	0.525%	965,582	1.263%	917,008	1.055%
산림화재위험부담특약	2,084	0.004%	5,447	0.009%	6,572	0.010%	4,598	0.006%	5,107	0.006%
산림풍수해부담특약	420	0.001%	5	0.000%	555	0.001%	1,119	0.001%	2,095	0.002%
신체손해상책임부담	710,292	1.371%	1,079,368	1.864%	1,367,213	2.089%	1,150,393	1.505%	943,962	1.086%
풍수재위험부담특약	54,358	0.105%	71,827	0.124%	112,713	0.172%	297,373	0.389%	374,641	0.431%
전기위험부담특약	72,406	0.140%	308,618	0.533%	162,712	0.249%	1,651,639	2.161%	1,743,334	2.005%
지진위험부담특약	2,385	0.005%	3,705	0.006%	2,314	0.004%	29,487	0.039%	7,049	0.008%
소요, 노동 쟁의등	10,096	0.019%	3,710	0.006%	17,052	0.026%	28,141	0.037%	51,572	0.059%
유리손해부담특약	17	0.000%	127	0.000%	796	0.001%	1,285	0.002%	2,460	0.003%
병동(병상) 위험부담	30,764	0.059%	19,873	0.034%	20,431	0.031%	106,992	0.140%	94,195	0.108%
유가증권개발행비용	0	0.000%	26	0.000%	40	0.000%	0	0.000%	0	0.000%
야간간관풍수재위험	0	0.000%	0	0.000%	13,410	0.020%	0	0.000%	1,342	0.002%
확장위험부담특약	0	0.000%	0	0.000%	0	0.000%	35	0.000%	1,115	0.001%
악의적인 파괴 행위	0	0.000%	0	0.000%	0	0.000%	0	0.000%	0	0.000%
실손보상특약	0	0.000%	0	0.000%	0	0.000%	0	0.000%	0	0.000%
재조달가액부담특약	0	0.000%	0	0.000%	0	0.000%	0	0.000%	0	0.000%
기업휴지보험부담특약	0	0.000%	0	0.000%	0	0.000%	0	0.000%	0	0.000%
기 타	146,982	0.284%	16,779	0.029%	11,772	0.018%	30,732	0.040%	0	0.000%
합 계	1,753,310	3.385%	1,998,875	3.452%	2,248,824	3.437%	3,513,064	5.904%	4,417,159	5.080%

註) 1. 자료 : 한국요율산정회간 '보험통계연보'

2. 협정요율만 산출한 것임.

년에서 1985년까지는 평균 3.4% 수준이며 1986년과 1987년은 각각 5.9%와 5.1%로 특약 이용율이 최근에 와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전기위험부담특약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구내폭발 손해부담 특약도 1985년도에 비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전기누전이나 가스폭발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별 특약 이용율을 보면 보험료면에서는 일반물건과 공장물건이 높고 점유율면에서는 주택물건이 5%선이고, 일반물건은 연도별로 하향추세이며 공장물건은 1986년과 1987년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주택물건에서는 신체손해배상책임부담특약이, 일반물건에서는 도난위험부담특약, 신체손해배상책임부담특약, 전기위험부담특약 등이, 그리고 공장물건에서는 전기위험부담특약과 구내폭발손해부담특약, 풍수재위험부담특약 등의 이용율이 높아 각 물건별 특성에 맞는 특약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물건별 특약 이용율을 분석하여 본 바 그 이용도가 매우 부진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특약들이 현실에 적합한 것들이어서 상품을 권유하는 적극성의 강도에 따라서는 이 분야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화재보험의 증대방안

지금까지 화재보험의 원수실적과 특약실적을 협정과 비협정, 물건별 통계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화재보험은 계속 성장하나 그 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이며 보험종목간의 구성비에 있어 화재보험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하향추세에 있음을 인식하였다. 더욱이 각 물건별 특약이용도가 매우 저조해 향후 전개되는 화재보험산업에 끼칠 국내외의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볼때, 화재보험산업을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이 시급한 과제다.

첫째, 보험가입금액의 현실화를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도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에게는 보상의 혜택을 높여주고 보험자는 보험료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재산보험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시점과 보험사고시점간의 보험가액 차이로 거의 대부분이 일부보험이 되고 있다. 손해보험, 특히 재산보험은 손해보상원칙에 의거해 보상이 제한되고 있다. 즉 사고시점에서 재산의 실제 현금가치(Actual Cash Value) 이상으로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비례보상이 되고 있다. 만약 실제적 현금가치(Actual Cash Value) 이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게되면 이것은 보험의 기본원칙인 손해보상원칙, 즉 실손보상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험의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손해보험업계도 1980년대에 들어와서 위험관리의 기법을 도입하여 각 사가 그 기능을 확충하여 가고 있다. 현재는 주로 위험관리를 보험계약에 대한 적절한 보험요율 산정 내지 구득과 위험의 보유측면

에서 활용하고 있어 Under-writing Inspection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래의 기능은 위험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최적처리기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대안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여론 조사하여 수정 보완하는 제단계를 실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저의 비용으로 위험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에 최저이윤을 제공하는 것이다.

〈표 4〉는 H사의 화재보험 부분 보험현황을 위험조사한 결과다. 모두 91건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의 초기 두 단계인 위험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위험처리최적기법 중의 하나인 보험가입현황을 파악하였는데, 78%에 해당되는 71건이 일부보험이고, 초과보험과 전부보험이 각 11%로 밝혀졌다. 조사대상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화재보험가입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음미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사료된다.

현재 대부분의 화재보험이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의 시가보다 적은 감정가 위주로 보험가입이 되고 있어 공장물건의 경우 손해발생시 비례

〈표 4〉 화재보험 위험조사 현황

항 목	건수	구성비	비고
일부보험	71건	78%	
초과보험	10건	11%	
전부보험	10건	11%	
합 계	91건	100%	

- 註) 1. 상기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을 비교 가능한 계약만을 계산한 것임.
 2. 따라서 신규계약중 전부보험, 보험금액을 산출하지 않은 위험조사 서비스 실시 만의 물건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
 3. 조사기간 : '86. 2~'89. 5
 4. 자료제공 : H사 위험관리부

보상이 되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험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키면서 적절한 요율을 적용하면 보상에서 야기되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보험료의 수입도 함께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화재보험에 추가시킬 수 있는 각종 특별약관을 적극 활용하여 보험료수입의 증대를 모색하는 방법이다.

본래 특약이란 기본약관을 변경, 수정, 확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위험(Perils)을 추가 내지 제외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특약의 활용범위를 증폭시켜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차원에서 그 형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계성 재산을 확장담보하는 특약(Forms Providing Personal Coverage)
- 2) 기업의 재산을 확장담보하는

- 특약(Forms Providing Commercial Coverages)
- 3) 담보손인을 추가시키는 특약(Forms Increasing Perils Covered)
 - 4) 담보손해를 추가시키는 특약(Forms Increasing Losses Covered)
-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화재보험에 추가시켜 사용할 수 있는 특약은 모두 40여 가지이며 이 중에서 많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특약은 20여 가지로 파악되었다. 이런 특약을 위 기준에 비추어 분류하여 보면 거의 대부분이 3)과 4)의 특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확장담보위험특약, 악의적인 파괴행위부담특약 그리고 풍수재위험부담특약은 담보손인(Perils covered)을 추가시키는 특약의 형태이고 실손보상특약, 재조달가액부담특약 그리고 기업휴지손해부담특약은 담보손해(Losses Covered)를 추가시키는 특약이다.

〈표 5〉은 특별약관을 추가시킬 경우 공장물건의 보험료를 산출한

예다.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실손보상특약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신설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실적이 거의 없지만 이 특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권유하면 상당한 실효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보험 보통약관 13. [2]에 의거하면 공장물건은 이재발생시 비례보상하게 되어 있다. 공동보험약관(80% Co-Insurance Clause)인 실손보상특약을 추가시키면 재산보험에서 야기되는 일부보험의 불만을 상당수준 해소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원래의 공동보험약관(Co-Insurance Clause)은 요율의 형평을 기하고 비례보상에서 야기되는 보험계약자의 Co-Insurance Penalty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표6〉은 실손보상특약을 첨부하였을 때 보험료를 산출한 예다. 이는 실손보상 특약의 효과가 자명한 것으로 향후 손보업계는 이 특약을 적극 활용하여야 되겠다.

이밖에 업체가 적극 주력하여야 할 특약으로 기업휴지손해부담특약이 있다. 아직 이 특약의 운영에 익숙하지 않고, 또한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특약의 공급이 부진하나 이 특약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보험수요자를 개척하면 이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수입 보험료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모집조직에 대한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Marketing에 종사하는 보험모집인에게 고도의 보험지식을 숙지시켜 보험수요자의 구

〈표5〉 특별약관을 첨부했을 경우 공장물건의 보험료 산출예 (단위 : 원)

물 건	개 요	부 보 내 용				비 고
		담보위험	보험요율	보험료	%	
공 장 물 건	1. 보험가입금액: ₩100,000,000	1. 보통약관	0.3940%	406,000	100.0%	건물담수: 2급 기본요율: 0.394% 동산할증: 0.060% 전기위험부담특약은 기계기구에만 적용 註) 구내폭발위험은 확장위험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합계에서 제외
	2.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2. 구내폭발	0.0240%	24,000	5.9%	
	3. 영위최종: 합성수지 가공공장	3. 풍수재위험	0.0487%	48,700	12.0%	
	4. 목적물: 가. 건물: ₩30,000,000 나. 기계: ₩50,000,000 다. 동산: ₩20,000,000	4. 전기위험 (기계)	0.2500%	125,000	30.8%	
		5. 확장위험	0.0640%	64,000	15.8%	
	합 계		0.7567%	643,700	158.5%	

註) 1. %는 보통약관 적용요율에 대한 구성비.
2. 확장위험 담보내용: 폭발+폭풍+우박+항공기+차량+연기손+소요, 노동쟁의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판매력을 키워 주어야 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산보험에 대한 Marketing 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모집종사자들도 부터 많이 듣고 있다. 가계성보험의 판매는 그런대로 보험증권이 단순하고 표준화되어 용이하나 기업에 적합한 재산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한다.

화재보험이 대부분인 재산보험을 적극적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보면 이 분야 종사자들 거의가 미국의 보험대학출신이거나 미국의 보험회사가 공인하는 보험연수기관의 교육이수자들이다. 우리나라도 판매조직 종사자들을 외국과 버금가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이들 종사자들이 보험수요자를 찾아 보험을 권유할 때 적절한 보험안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하여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재산보험, 특히 화재보험의 판매를 증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기업의 위험관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험모집종사자들이 접촉하는 기업의 보험관계자들을 단계적으로

로 보면 보험담당사원(Insurance Clerk)→보험진문 취급자(Insurance Buyer)→보험관리자(Insurance Manager)→위험관리자(Risk Manager)로 변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위험관리자의 업무 영역은 ①보험업무(Insurance), ② 안전 및 손해의 통제업무(Safety and Loss Control), ③ 위험분석업무(Risk Analysis), ④ 직원의 급부업무(Employee Benefits)등으로 광범위하다.

재산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는 일부보험과 담보오류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기업에 위험관리자를 양성시킴으로써 담보 선택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또한 보험가입금액이 적으면 보험요율이 저렴할 것이라는 종래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위험관리자를 통하여 기업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보험판매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해소시킬 수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보험사의 판매조직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특히 위험을 관리하

는 종사자들에게 위험관리를 교육시켜 위험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실질적이고도 특별한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다. 보험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업의 위험관리자는 보험자에게는 매우 유익할 것이며 고도의 Know-How를 요구하는 재산보험은 향후 그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맺는말

보험상품의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고도의 보험지식을 갖춘 판매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에게 판매의 전문적 기질을 고취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각 보험상품에 대한 Marketing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재산보험을 판매하는데 있어선 종래의 판매기법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위험관리가 기업에 확산되어 우수한 위험관리자가 기업의 위험을 관리할 때 이들을 상대하는 전문적인 보험지식을 소유한 고도의 보험전문 판매자의 양성은 시대의 요청이라고 보여진다.

화재보험의 증대를 이와 관련하여 고려하여 볼 때 재산보험 판매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Marketing 전략을 마련하고, 현재 사용중인 특별약관을 보험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판매가 부진한 특약의 활용도를 높여 그 보완적 기능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화재보험산업의 위축을 줄이도록 우리 손보업체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㉞)

<표6> 실손보상 특별약관(80% Co-insurance Clause)을 첨부하여 부보한 예

구분	실손보상특약 미첨부시	실손보상특약(80%) 첨부시	비고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80,000,000	₩80,000,000	실손보상특약첨부에 따른 보험료 추가부담액: ₩64,640
	보험료 ₩323,200	₩387,840	
손해액	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 (80,000,000×0.404%)	보험가입금액×요율×할증계수 (80,000,000×0.404%×120%)	실손보상특약 첨부에 따른 보험금 추가수령액: ₩16,000,000
	손해액 ₩80,000,000	₩80,000,000	
보험금	지급보험금 ₩64,000,000	₩80,000,000	손해액×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80%
	손해액×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80%	

註) 부보명세

1. 보험가액: ₩100,000,000
2. 보험목적물: 기계기구
3. 영위직종: 봉제공장
4. 보험요율: 0.404%(2급구조 건물내 수용)